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670호 2022. 5. 2.(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1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2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3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1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31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4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3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2. 5. 2.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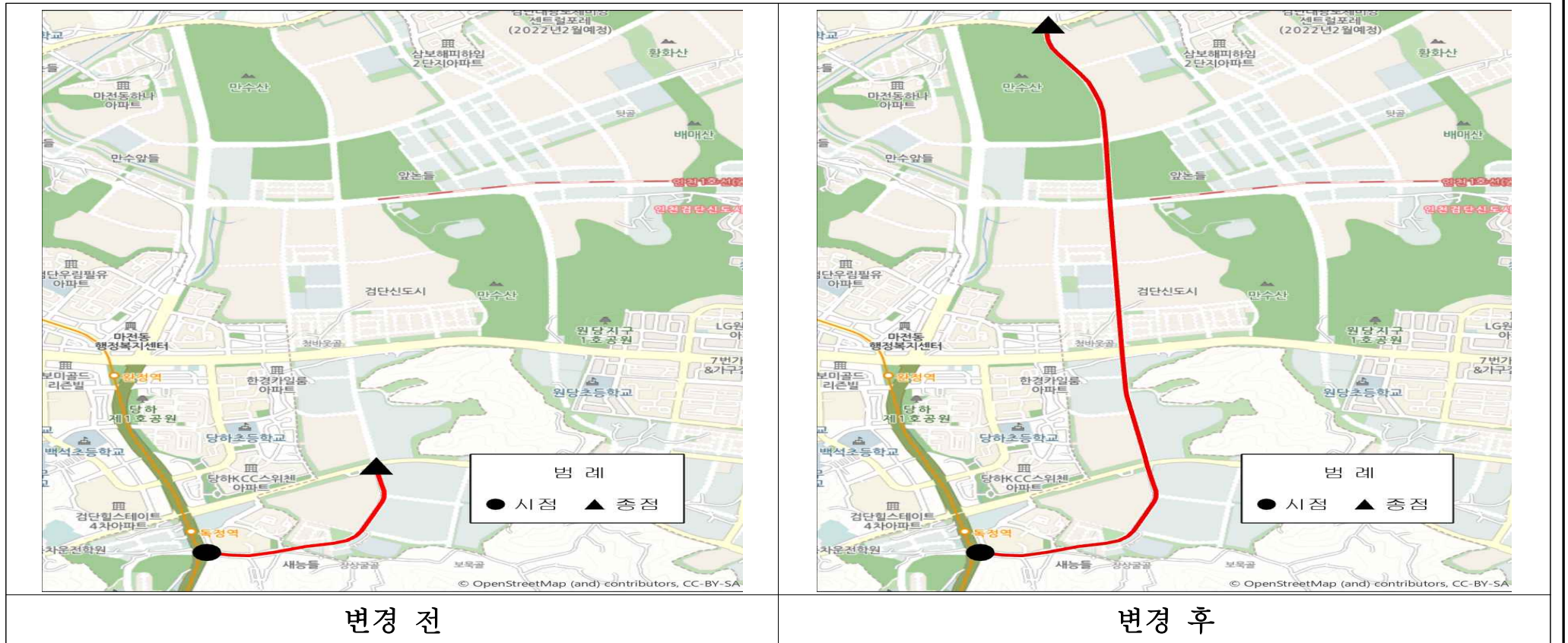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 유형	도로명	시 점		종 점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효력 발생일)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로	독정로	백석동	산26-15	당하동	848-1	952	25	20	1	94	인천광역시 서구	2022. 5. 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일부 구간 변경
	변경			백석동	산26-15	블로동	472-6	3496	25	20	1	348			

###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독정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7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5.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5-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 방법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7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에 세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에 세지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3번길 8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결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문자에 세지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환내로72번길 7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환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문자에 세지	청라 삼정그린코아 터시티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9-1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번길 24-1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B동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9-1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번길 24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A동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0-9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07번길 9 (마전동)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문자에 세지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원당동)	20200420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	전자우편	메트로시티 (첨단신도시 C12-2-2)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48-1 (마전동)	20081231	환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전자우편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9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에 세지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08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8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문자에 세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73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전자우편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첨단신도시 AB2)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2-5-2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 방법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A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9 (오류동)					B동
2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B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1 (오류동)					A동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5-2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52 (신원동)	건축과-15923 (2022. 4. 20.)호에 의거	20090922	전일영을 생산하던 아몰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705 (당하동)	토지정보과-10203 (2022.04.25.) 호에 의거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우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1호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아파트용지(D-1 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1	53-1	33,415.2	1	520.6		D-1	53-1	33,415.2	1	28,739.0	
			2	570.9							
			3	200.2							
			4-1	4,009.6							
			4-2	5,540.6							
			5	3,212.2							
			6	2,643.8							
			7	778.4							
			8	1,084.5							
			9	10,178.2							
			10	4,676.2				2	4,676.2		
69-1	20,697.3		1	5,891.5		69-1	20,697.3		1	5,891.5	
			2	14,805.8					2	14,805.8	
70	28,370.9		1	28,370.9		70	28,370.9		1	28,370.9	
93-1	18,948.9		3	18,386.6		93-1	18,948.9		3	18,386.6	
			8	562.3					8	562.3	
94	39,757.4		1	30,135.1		94	39,757.4		1	30,135.1	
			2	9,622.3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102	35,665.9		1	35,665.9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획지합병 - 1, 2, 3, 4-1, 4-2, 5, 6, 7, 8, 9 ⇒ 1 (10개획지→1개획지) ○ 획지번호변경 - 10 ⇒ 2	○ 획지 합병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2호

##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연희1·2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26-1, 심곡동 239-8번지 일원	783,089.7	-	783,089.7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B용도)(변경)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9	2,009.7	3-1	90.2		2-9	2,009.7	3-1	90.2	
		3-3	212.2				3-3	212.2	
		4	347.8				4	1,366.1	
		5	108.8				-	-	
		6	182.4				6	182.4	
		7	158.8				7	158.8	
		8	909.5				-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4,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합병</li> <li>- 4 : 347.8㎡</li> <li>- 5 : 108.8㎡</li> <li>- 8 : 909.5㎡</li> <li>⇒ 4 : 1,366.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합병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li> </ul>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3호

#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68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 II. 위 치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2,093,078.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 (2006.12.18)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가) 교통시설(변경)

##### ① 도로(변경)

#####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3	17,854	393,655.4	10	6,115	180,769.7	31	11,079	190,533.2	2	660	22,352.5
	변경	43	17,854	393,820.6	10	6,115	180,769.7	31	11,079	190,698.4	2	660	22,352.5
광로	기정	1	487	20,230.3	-	-	-	-	-	-	1	487	20,230.3
대로	기정	8	5,292	180,555.9	4	3,101	113,094.9	4	2,191	67,461.0	-	-	-
	변경	8	5,292	180,721.1	4	3,101	113,094.9	4	2,191	67,626.2	-	-	-
중로	기정	30	11,508	188,104.2	5	2,901	66,541.8	24	8,434	119,440.2	1	173	2,122.2
소로	기정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 대로 2류 가감속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증 166.3㎡)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변경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가감속차로 계획

##### ② 주차장(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가) 공업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I	I-1(3)	54,590.5	1	-	12,502.4	필지 분할 가능
			2	-	12,502.0	
			3	-	15,034.0	
			4	-	14,552.1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I	I-1(3)	54,424.2	1	-	12,502.3	필지 분할 가능 3필지 감) 1.4㎡ 4필지 감) 164.3㎡
			2	-	12,501.5	
			3	-	15,032.6	
			4	-	14,387.8	

※ I-1(3) 가감속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한함)  
(변경없음)

## IV.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4호

##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032-560-492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80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 에서 “800원” 으로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 에서 “1,600원” 으로 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두선아(전화번호 032-560-4198, 팩스번호 032-560-2722, 전자메일 sunzim@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elis.go.kr/lgs1tntc/lgs1tNtcList>)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3 참조

<입법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8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500원” 을 “1,60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u>150원</u>을 말한다.</p> <p>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u>500원</u>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p> <p>-----</p> <p>1.-----</p> <p>----- <u>800원</u>-----.</p> <p>2.-----</p> <p>-----<u>1,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 붙임 2.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붙임 3.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6조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계)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총 계	21,832/3	34,232/6	45,224/8	66,999/11	97,149/82
1. 전자송달	15,607/2	26,582/3	36,236/5	57,133/8	82,848/66
2. 자동이체	4,178/0.6	4,834/0.7	5,342/0.8	5,573/0.8	8,081/6
3. 전자송달+ 자동이체	2,047/1	2,816/1	3,646/1	4,293/2	6,225/9

- 비용추계기간 : 1년(365일)
- 4개년 세액공제 건수 평균증가율 : (당해건수-직전연도 건수)/직전연도 건수
- 추계공제세액 : 직전년도 공제건수\*3개년 평균증가율\*인상공제금액
- 세액공제(22년): 전자송달(800원), 자동이체(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1,600원)
- 개정 첫해인 2022년도 3개년 평균 증가율, 이후 년도는 완만한 증가율 예상.

##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자동이체 등 공제세액(A)	82	99	109	120	132
우편비용 절감(a)	32	38	42	46	51
세입감소(A-a)	50	61	67	73	81

- 2021년 세액공제액(11백만원)/ 구세징수액(234,644백만원)=4/100000(0.004% )
- 세액공제금액 인상에 따른 우편발송비용 절감 예상

### 3. 연도별 공제 추계표 : 붙임

### 4. 부대의견

기존 세액공제금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최대 한도로 인상함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돕고 납기 내 정확한 징수로 각 세목별 징수율 증가 및 체납액 감소로 인한 세무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세저항 완화.

작성자 : 자치행정국 세무1과장 장창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2	△99	△109	△120	△132	△543
자체수입		△50	△61	△67	△73	△81	△333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0	△60	△66	△73	△80	△332
	지방세	△50	△60	△66	△73	△80	△33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600원”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4.25.~2022.5.16.) 결과:

2)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붙임 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② (생략)</p>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p> <p>-----</p> <p>1. -----</p> <p>----- <u>800원.</u></p> <p>2. -----</p> <p>----- <u>1,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붙임 나.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2.18. 시행, 법률 제18437호, 2021.8.17., 타법개정)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붙임 라

##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비고
세입	구세 감소분	82	
	소계	82	
세출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구비	소 계	82	
	일반회계	82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세액공제('22년) : 전자송달(800원), 자동이체(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1,600원)

\* 조문명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6조제1항)

<입법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8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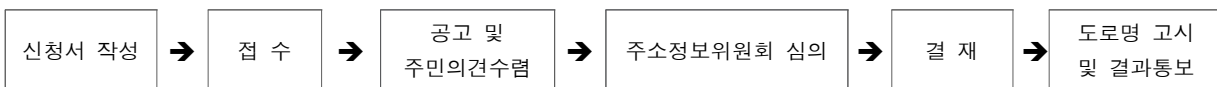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지구,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불로2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2. 5. 2. ~ 2022. 5. 16.(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변경/ 도로명 부여·변경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절차



## 5. 의견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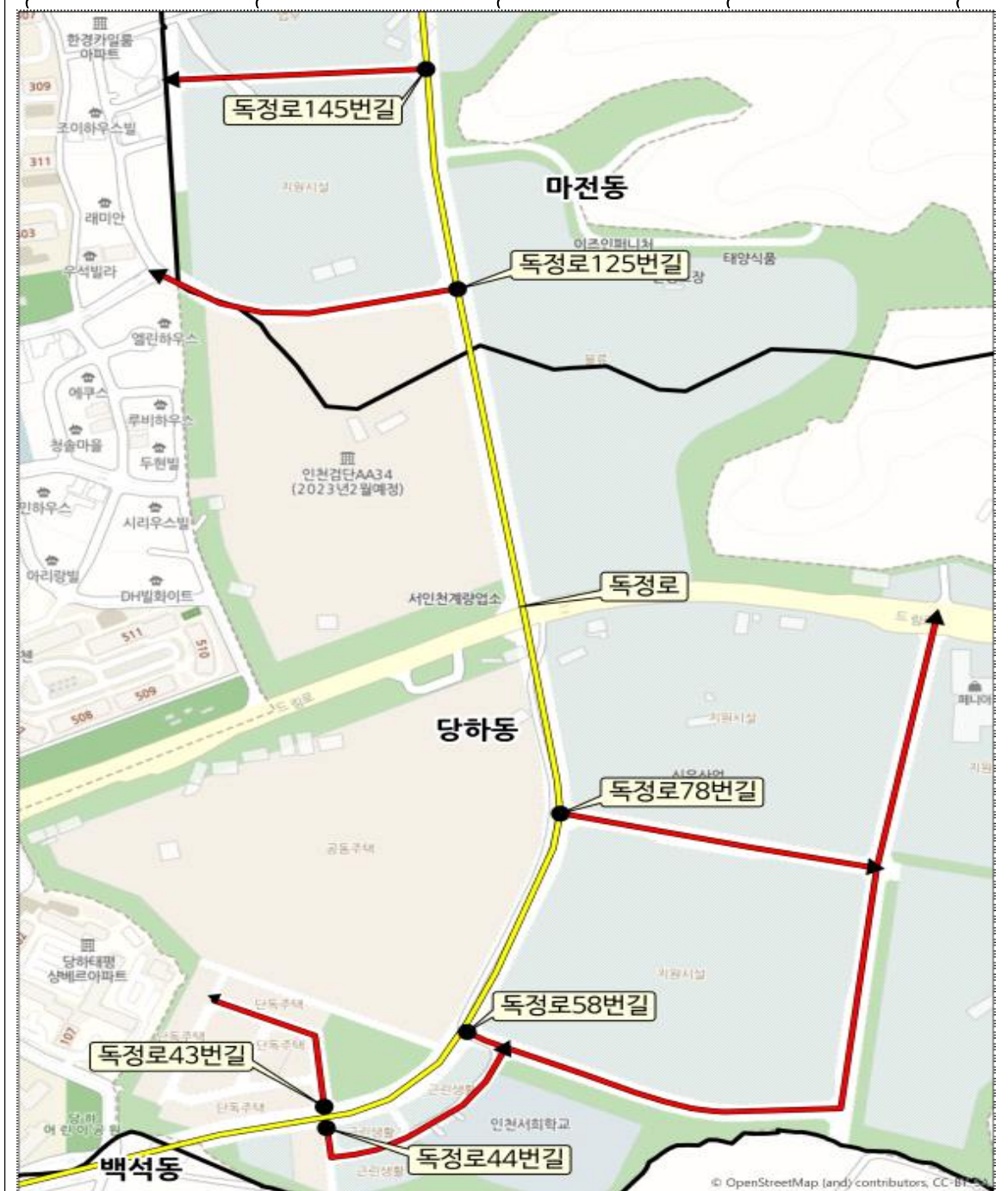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11층 토지정보과 (22726)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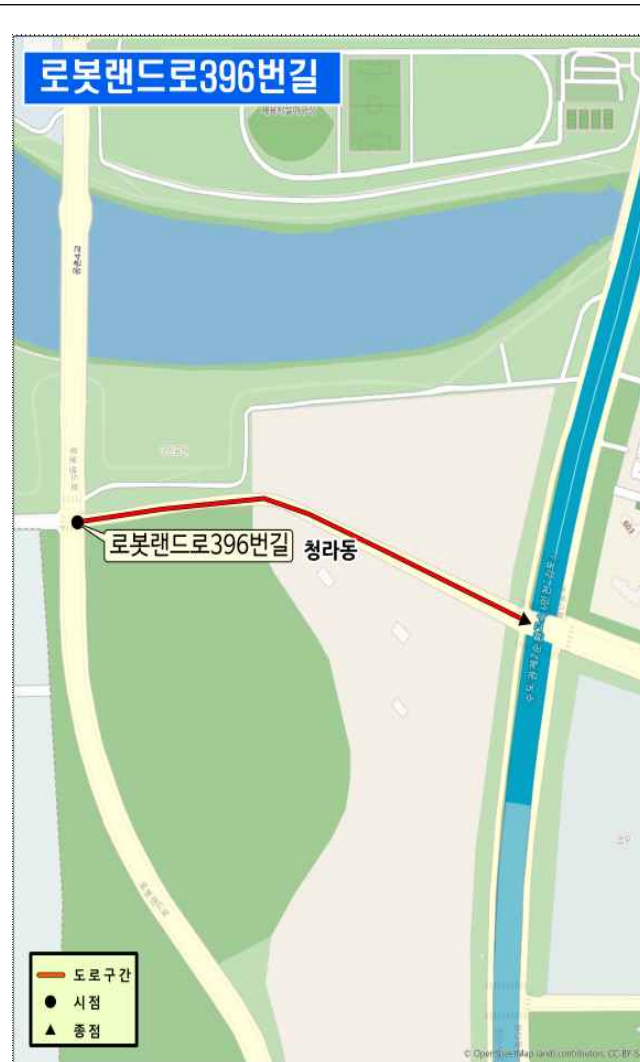
연번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한중로	백석동	산51-1	백석동	산26-15	962	20	20	검암경서동	한들지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
2	로	한중1로	백석동	100-1	백석동	60	481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첫번째 도로
3	로	한중2로	백석동	62-5	백석동	산21-3	163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두번째 도로
4	로	한중3로	백석동	산40-13	백석동	68-1	489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세번째 도로
5	로	한중4로	백석동	76-19	백석동	80-18	111	16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네번째 도로
6	로	한중5로	백석동	77-2	백석동	77-1	601	16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다섯번째 도로
7	로	용해로	불로동	48-12	불로동	849	397	16	20	불로대곡동	용해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8	길	한들로84번길	백석동	101-7	백석동	산51-1	209	10	20	검암경서동	한들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8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길	독정로43번길	당하동	789	당하동	820-2	158	11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3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길	독정로44번길	당하동	789	당하동	800-6	217	11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길	독정로58번길	당하동	807-1	당하동	748-5	762	15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8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길	독정로78번길	당하동	산192-1	당하동	772-7	254	16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78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길	독정로125번길	마전동	산203-1	당하동	산203-1	245	16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25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길	독정로145번길	마전동	524-3	마전동	545-8	195	12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45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길	독정로324번길	불로동	489-9	불로동	826	422	16	20	불로대곡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2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길	로봇랜드로396번길	청라동	12-21	청라동	12-20	637	20	20	청라3동	로봇랜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96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길	서곶로96번길	가정동	산78-4	가정동	산21-20	398	10	20	가정2동	서곶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96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길	봉오대로268번안길	가정동	538-2	가정동	산21-45	589	15	20	가정2동	봉오대로268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블로2지구

## 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연번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p>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2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300px;">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p>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2-46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 유승한내들에듀파크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3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6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2년 5월 2일

###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2년 8월 2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